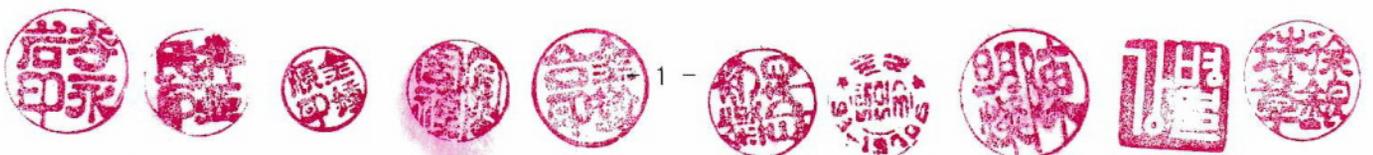


2025년 제1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 **회의 명:** 사회복지법인 해솔 제 1차 정기 이사회
- **일 시:** 2025. 03. 05.(수) 11:00 - 13:00
- **장 소:** 사회복지법인해솔 사무국
- **참 석 자:** 대표이사 서은주 외 8명(의사 8명: 서은주, 김홍순, 허남진, 김경태, 김홍진, 박정연, 현연수, 이영환 / 감사 1명: 신병찬)
- **의 제:** 1. 2024년 결산안 심의
2. 2025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3. 법인 정관 변경안 심의
4. 법인 자산 매각 관련 사항.
- **관련근거:** 정관 제26조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회의시작 11시 00분)**
이사회 의장인 서은주 대표이사가 이사 8인중 총 8인이 참석하여 정관 제 28조에 의거 이사회 개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사회복지법인해솔 2025년 제 1차 정기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전차회의록 회람**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전차회의록을 회람을 통해 확인함. 의장이 이사들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함.
- **감사 보고**
【의 장】**김홍진** 감사에게 감사보고를 요청하다.



【**한경관감서**】이사회 자료를 참고하여 감사보고 하다.

【의 장】감사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여부를 묻다.

【**하삼현여사**】원안대로 받기를 원하며 동의하다.

【전체 이사】동의 재청 하다.

【의 장】**하삼현여사**님의 동의와 **김경대이사**, **김홍순이사**의 재청으로 의결함 또한 참석이사 전원의 박수로 감사보고 내용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 의안 심의 및 승인

■ **의안 1호:** 2024년 사회복지법인해솔, 장애인공동생활가정(멘토의집, 은혜의집, 보람의집), 장애인거주시설(예원의집), 주간활동서비스, 멘토장애인 평생교육원, 자립생활체험주택, 온누리 통합돌봄센터의 결산안 심의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해솔, 장애인공동생활가정(멘토의집, 은혜의집, 보람의집), 장애인거주시설(예원의집), 주간활동서비스, 멘토장애인 평생교육원, 자립생활체험주택의 결산안의 내용을 배부된 자료(회의자료 P16~P52)를 통해 설명함.

【의 장】설명한 1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문함.

【**현영수이사**】결산은 감사님께서 점검하셨기에 특히 사항이 없다. 판단됩니다.

【**여삼현이사**】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함.

【**김홍진, 김홍순**】원안대로 받기를 재청함.

제 1호 의안에 대해 **하삼현여사**의 동의와 **김홍진이사**, **김홍순이사**의 재청으로 의결함. 또한 참석이사 전원의 박수와 함께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안 2호:** 사회복지법인해솔, 장애인공동생활가정(멘토의집, 은혜의집, 보람의집), 예원의집, 주간활동서비스, 멘토장애인 평생교육원, 자립생활체험주택, 온누리통합돌봄센터 2025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해솔, 장애인공동생활가정(멘토의집, 은혜의집, 보람의집) 예원의집, 주간활동서비스, 멘토장애인 평생교육원, 자립생활체험주

사회복지법인 해솔

택, 온누리통합돌봄센터 추경예산안 내용을 배부된 자료(회의자료 P54~90P)를 통해 설명함.

【김용진여사】예원의집의 외부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질의

【대표이사】외부사업으로 지원받아 기능보강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여사】자립생활체험주택 이월금 감소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박형민여사】예원의집 여비 감소에 대한 사유를 질의 함.

【대표이사】감소한 여비는 후원금 및 등으로 대처 하려 합니다.

【대표이사】2024년 12월 종사자 포상 및 자격취득 지원금 등으로 지출함.

【의 장】설명한 2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문함.

【김용진여사】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함.

【여상진여사, 김경태여사】원안대로 받기를 재청함.

제 2호 의안에 대해 **김용진여사의 동의와 여상진여사, 김경태여사의 재청**으로 의결함. 또한 참석이사 전원의 박수와 함께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안 3호: 사회복지법인해솔 정관 변경안 심의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해솔 정관 변경에 관련하여 배부된 자료(회의자료 P92~100P)를 통해 설명함.

【의 장】설명한 3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문함.

【박형민여사】법안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이라 동의 합니다.

【김용진여사】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함.

【여상진여사, 한민수여사】원안대로 받기를 재청함.

제 3호 의안에 대해 **김용진여사의 동의와 여상진여사, 한민수여사의 재청**으로 의결함. 또한 참석이사 전원의 박수와 함께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변경되는 정관 내용

- 사회복지법인 해솔 정관 제5조(자산구분)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한다. 1. 별표 제1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변경후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설 정관 제6조(자산의 관리)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①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후	①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설 정관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후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년도 개시 5월 전 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설 정관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후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설 정관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변경후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설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①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변경후	①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솔 정관 제21조(임원의 직무)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신규 삽입
변경후	6.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사회복지법인 해솔 정관 제26조(의결사항)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후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해솔 정관 제27조(이사회회의 소집)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후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솔 정관 제 30조(이사회 회의록)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③대표이사는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변경후	③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솔 정관 제 34조(직원)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신규 삽입
변경후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솔 정관 제 38조(공고의 방법)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① 이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실는다.
변경후	① 이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사회복지법인 해솔 정관 부칙 변경

변경 사항	
변경전	③(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 내지 3과 같다.
변경후	③(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은 별표 2와 같다. ④(법인의 사용인장) 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3과 같다.

■ 의안 4호: 법인 자산 처분에 관련 사항

【대표이사】법인의 자산인 은혜주택 처분 사유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회의 자료 P101~104P)를 통해 설명함.

【의장】설명한 4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문함.

【김동순이사】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함.

【이성진이사, 김경태이사】원안대로 받기를 재청함.

제 4호 의안에 대해 김동순이사의 동의와 이성진이사, 김경태이사의 재청으로 의결함. 또한 참석이사 전원의 박수와 함께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법인 재산 처분 내용

- 주 소모항시 남구 회양대로 835-1 본채주택 301호(건물)
- 처분금(매각금)납입현황(금30,000,000원)
- 2025년 2월 28일 갑종필거액으로 매각(금40,000,000원)

□ 폐 회(회의종료 13시 00분)

【대표이사】이상으로 의안 심의와 보고내용을 마치고
사회복지법인 해솔과 산하 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

【의 장】이상으로 의안 전부의 심의 및 보고내용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함.

【참석자전원】참석 이사 전원 박수로 사회복지법인 해솔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함.

이상과 같이 의결하고 사회복지법인해솔 2025년 1차 정기 이사회를 폐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확정하기 위하여 참석 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함.

2025년 3월 05일

사회복지법인 해솔

[Redacted signature area]